

Special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법적 고찰



글 · 이 경 환¹⁾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I. 머리말

세계는 하나로 통일화(Globalization)되어 가고 있으며, 정보와 경제면의 경우는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의료시장 역시 기술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국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무리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다면 승리하지 못한다. 경쟁력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공유화된 정보의 세계에 내놓고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입국한 외국인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의료서비스는 의료기술의 수준 및 가격경쟁력 면에서 볼 때 비교우위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1)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보건학 박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역임

로 활용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함으로써, 각종 규제에 의하여 의료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제한을 받고 있는 국내의료기관 등은 그 수익을 증대시키고, 의료서비스 관련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신규 고용증대 등을 통한 국민경제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현행 의료법 아래서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환자유치를 할 수 있을 뿐인 바, 적극적이며 경쟁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국가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정부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다만 최근에 이르러 의료법 개정준비 등 이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외환자유치와 관련하여 현행 법규상의 규제 및 그 개정의 필요성과 해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업체 설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현행 의료법상의 규제

해외환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국내병원에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환자유치를 위한 알선·유인 및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너무 강하여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먼저 우리 의료법상의 규제의 정도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 환자 알선·유인 등 규정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²⁾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³⁾ 이러한 알선·유인의 금지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⁴⁾

의료법상의 알선·유인 등 금지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금지행위에 관하여 보자. ‘소개(紹介)·알선(斡旋)’이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誘引)’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使囑)하는 행위’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한다.⁵⁾ 따라서 금지행위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치할 경우 대부분이 해당하게 된다.

다음으로, 행위주체에 관하여 보자.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유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

2) 의료법 제25조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료법 제67조 (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46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5)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하지 않는다.⁶⁾ 그러나 이 규정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전면 금지함은 물론 그의 환자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⁷⁾

환자의 알선·유인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의 규정은 의료업계의 부당경쟁을 방지하여 의료의 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확립됨과 아울러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개 의료기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제3의 전문업체를 통하여 환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크다. 의료법상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의 금지규정은 매우 엄격하고 이는 국내환자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의 유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아래서는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 의료광고 규정

의료법은 의료광고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⁸⁾ 이들 규정들은 대부분 환자유치와 밀

6)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대법원(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다5603 판결)은 안경사가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를 고용하여 자신의 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 등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나누어 준 행위는 의료기사 등에관한법을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7)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 판결

8) 의료법 제46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접한 관계가 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또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고, 위 각 규정들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⁹⁾

한편,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는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에 관하여 12개 항목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¹⁰⁾

이들 광고관련 규정은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전혀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의료기관이라도 의료관련 광고를 함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홍보함에는 커다란 제약으로 존재하게 되고, 더구나 전문업체가 적극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9) 제69조 (벌칙)

제17조제1항·제2항,.....제46조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 (의료광고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9.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1.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2.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3. 소결

현행법 아래에서는 의료기관 등이 국내외 의료기관 등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료기술 수준, 의료서비스 가격 등에 관한 비교우위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 더욱이 의료기관 등이 스스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방법만이 허용되고 있을 뿐이며, 해외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외부의 전문적인 소개·알선업체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완화하는 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III. 법규 등 정비의 필요성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환자의 알선유치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고 필요한 관련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이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환자유치기관의 설립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1. 환자의 알선·유인 등 규정

의료법상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의 금지규정은 매우 엄격하고 이는 국내환자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의 유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아래서는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환자의 알선·유인 등을 금지하는 이유는 국내의료업계의 부당경쟁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한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법규가 개정되어야만 한다.

2. 의료광고 규정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이유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현대의 학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의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로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광고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한 의료질서의 문란 또는 불필요한 국민 총의료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광고규정은 허용되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율(positive system)하고 있으므로 해외환자의 적극유치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하여 학계와 의료계에서 반론이 많이 있어 왔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¹¹⁾이 있기도 하다. 적어도 해외환자의 유치를 위한 측면에서는 허위·과장광고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심어주는 광고 등에 대하여만 엄격히 제한하여 규율(negative system)함으로써 해외환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홍보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제3의 전문업체에 의한 적극적인 의료광고를 통하여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의료기관의 과당경쟁은 상당부분 억제될 것이다.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모든 정보가 빠른 시간 내에 전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을 negative system으로 바꾸어 적극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의료기관평가 및 인증제도 마련

해외환자 유치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의료기술의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내용 등이 얼마나 비교우위에 있고 신뢰성이 있는가이다.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기술 수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 의료서비스의 가격 등에 관한 일정한

11) 헌법재판소는 “특정의료기관 또는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및 그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69조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¹²⁾

우리나라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규정¹³⁾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 서비스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내실이 있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의료기관에 대한 구전(口碑)으로서의 신뢰가 쌓이게 하는 좋은 홍보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일정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알선유치와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주도록 제한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와 같은 국제의료기관평가 및 인증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기술 수준 등에 관하여 평가 및 인증을 받고 이를 해외환자 유치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¹⁴⁾

4. 비자(Visa)제도 개선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할 해외환자는 선진국에서 입국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소재 국가에 거주하는 환자가 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상된다. 최근 조선

12)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51년에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 Organizations)이 설립되어 미국 내 15,000여개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CCHFA(Canadian Council on Health Facilities Accreditation)을 통하여, 호주는 ACHS(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에 의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3) 제47조의2 (의료기관평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의료기관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의료기관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JCI는 미국 의료기관 평가 위원회인 JCAHO에서 국제적인 의료기관 평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30여 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11개 영역 369개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족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국내 불법체류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까다로운 비자(Visa)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활동에 많은 장애가 될 것이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환자에 대해서는 비자제도를 완화하거나 그 처리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고, 비자발급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어렵게 유치한 해외환자가 입국하지 못하거나 그 치료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게 제도를 정비하여 부처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 소개 · 알선 전문업체의 설립

위에서 살펴본 단순한 제한점의 완화와 우리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국내외적 평가 내지 인증 및 외국환자의 출입에 대한 어려움의 극복만으로는, 적극적인 해외환자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홍보에 관한 한 아마추어 수준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직접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료기술 수준이나 의료서비스 가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거나 유인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소개 · 알선업체를 설립하여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소개 · 알선 · 유인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1. 특별법의 마련

국내 의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해외환자 유치를 영업으로 하는 전문업체를 설립하는 법규제정이 필요하다.

주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 ① 해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업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들에 한하여 해외거주

환자를 대상으로 소개·알선·유인하며 국내 의료기관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문업체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 또는 소개·알선 등의 활동을 하는 방법 및 범위 등과 관련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국내 의료질서에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 한정하여 규제한다.

- ② 자본금 규모 및 전문인력 보유 등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영업을 하도록 허용한다. 전문업체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설립허가제도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전문업체는 우리의 의료기술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한 번의 실수는 우리의 의술을 실추시키게 되고, 마구잡이식의 해외환자 유치는 우리나라의 의료에 대한 국가신인도를 결정하게 되므로, 의료기관의 인증만이 아니라 유치회사의 설립에 대한 인증제도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유치회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회사에 대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유치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허가취소까지 해야할 것이다.

3. 전문업체의 법인화(法人化)

전문업체가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함에 있어 해외환자에게 정보를 잘못 제공하는 등으로 해외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전문업체가 해외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 문제에 대비하고 해외환자들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불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제도 내지 손해배상책임기금제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 비단 이러한 손해배상책임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대외적 신인도를 제고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업체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주식회사의 특성 및 설립절차

전문업체를 영리법인으로 하고 설립근거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4가지 종류의 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회사의 꽃'이라는 주식회사로 함이 바람직하므로, 여기서는 주식회사의 특성과 설립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주식회사(株式會社)는 전형적인 물적회사(物的會社)로서 사람의 결합보다는 자본의 결합에 그 특성이 있다. 즉,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가지고, 자본은 균일한 단위인 주식에 의하여 분할되며,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주식회사의 형태에서는 출자자인 주주의 책임이 그가 인수한 주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간접·유한책임), 또 그 지위는 증권을 통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어(주식의 자유양도성) 투자의 회수가 보장되므로, 다른 어느 종류의 회사보다 투자에 가장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따라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동기업의 형태가 되었고 회사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되었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제289조),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는데(상법 제291조), 그 결정 내용에 따라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절차를 밟는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발기인의 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발기인은 1인이면 족하다(상법 제288조). 또한, 주식회사의 설립납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경과에 대하여는 엄격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상법 제298조~300조, 제313조, 제314조), 발기인 등 설립관계자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상법 제321조~327조),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엄격한 강행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소개·알선 전문업체의 설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본의 투입뿐만 아니라 특별히 해외환자유치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분을 분배함으로써 대우해 줄 필요가 있으며, 변태설립사항¹⁵⁾을 정관에 기재하여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법인을 설립할 수

15)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제1호), ②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제2호), ③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수인의 성명(제3호),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은 보수액(제4호)을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상법 제290조).

있을 것이다. 변태설립사항들은 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하여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들이기에, 상법은 이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우리의 의료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경쟁력을 키워 해외환자를 우리 의료기관에 유치함으로써, 우리의 의료기술을 널리 알리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법규상의 알선·유인 및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의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제한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법규의 개정과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 및 비자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인 전문업체의 설립을 위하여 해외거주 환자의 알선·유인과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 및 유치전문회사의 허가제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살펴보았다.

세계화 시대에는 이에 맞게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극대화하여야 우리의 앞날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지 않고 뒤따라가기만 하다가는 세계화의 대열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낙후된 대열에 머물고 말 것이다. 세계시장에의 동참과 함께 의료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뿐만 아니라 법령도 우리의 사고에 맞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KHA**